

新

미·일정부간 반도체 무역에 관한 협정

본회 국제부

1. 목 적

본 협정의 목적은 시장원리와 미국과 일본 산업의 경쟁입장에 기초로 하며, 또한 GATT 원칙에 입각하여 반도체 분야에서의 자유무역 증대에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국 정부는 1986. 9. 2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86 협정하에 이룩한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있다.

2. 시장개방

1. '86 협정기간 동안 양국의 정부, 반도체 업계, 일본의 반도체 사용자들은 외국 자본과 연관된 반도체 업체의 일본 시장진출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왔고, 이 결과 상당한 시장개방의 진전이 이룩되었다.

다른 한편, 양국정부는 더욱 많은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일본시장에서 외국 자본과 연관된 반도체 업체의 시장진출 확대와 아

울러 일본의 반도체 사용자와 외국 자본과 연관된 반도체 공급업체간의 협조적인 판매자—구매자간의 유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일본의 반도체 사용자들은 외국 반도체의 사용과 공급이 상당하게 증가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미국정부는 일본시장에서 외국 자본과 연관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반영하는 외국산 반도체 판매증대를 기대한다.

2. 양국 정부는 본 협정기간 동안 시장개방이 점진적이고도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경쟁적인 전 품목에 걸쳐 판매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사용자들에게 외국자본과 연관된 반도체 업체들을 위한 시장확대 기회의 증대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지시킬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 소비자와의 제품 공동개발,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조치를 포함하여 일본의 반도체 구매자와 외국자본 연관 생산업체간의 장기적인 관계 증대를 통해서 일본에서의 외국 반도체 업체의 판매 증대를 지원할 것이다.

4. 미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대일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편집자 주 : 본고는 '91. 6. 11. 미·일 정부간 체결된 반도체 협정 원문을 요약·분석한 내용임을 밝힌다.

과 일본시장에서의 모든 판매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주지시킬 것이다.

미국정부는 일본 소비자와의 제품 공동개발,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조치를 포함하여 일본의 반도체 구매자와 외국자본 연관 생산업체간의 장기적인 관계 증대를 통해서 일본에서의 외국 반도체 업체의 판매증대를 지원할 것이다.

5. 양국정부는 본 협정의 시장개방 목적에 기여하는 일본과 외국 자본 연관 반도체 생산업체간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환영하고 이의 발전을 지원한다.

6. 일본정부는 국제 반도체 협력센터, 일본전자공업협회(EIAJ)의 외국 반도체 사용자 위원회, 또한 기타 관련 기관들이 세미나, 전시회, 공동 위원회와 태스크 포스의 연구, 통상사절단 활동 등의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미국 반도체공업협회(SIA)와 기타 관련기관이 상기 활동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정보교환과 상호 이해의 증대, 외국 자본 연관공급 업체의 시장확대 기회 유도에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한다.

7. (a) 본 협정에 따른 진전사항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에 각별한 관심이 주어질 것이다.

양국 정부는 또한 외국 반도체 업체의 Designins(미래 제품에 사용키 위한 새로운 반도체 개발), 일본의 반도체 구매자 및 공급업체와 외국 자본 연관 반도체 공급업체간의 장기적인 관계 등을 포함한 기타 중요한 물량과 품질에 관련된 요소에 대하여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b) 양국정부는 또한 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에 관건이 되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公正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쟁요인

—본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외국자본 연관 기업과 일본 기업에 의한 노력

—양국 정부의 노력

—시장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당사자의 노력과는 독립적인 기타 요소들.

8. 일본에서의 외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을 검토키 위하여, 양국 정부는 별첨 A에 나타난 통계를 채택키로 합의한다.

9. 양국정부는 본 협정에 명기된 시장 점유율 평가에서 사기업의 견해와 전문성을 주의깊게 고려함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반도체 및 사용자 업체 그리고 양국 정부의 실무급 전문가들이 시장개방과 본 협정에 부합하는 기타 시장개방 사안의 진전과 연관된 제반 요소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10. 일본정부는 외국산 반도체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1992년말까지 20%이상 성장하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미국 반도체 업계가 기대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대가 성취되는 것을 환영한다.

양국 정부의 위의 언급된 사항이 외국시장 점유율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이나 상한선,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한다.

3. 피해 덤팡에 관한 대책

1. 반도체 산업의 독특한 성격과 역사를 고려하여, 양국 정부는 GATT 반덤핑 조항에 부합하는 효과적이며 신속한 반덤핑 대책을 통하여 피해 덤팡 문제를 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2. 자료취합(Data Collection)

a. 일본정부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반도체 수출업체가 본 협정 별첨 "B"에 명기된 제품에 대한 제품원가, 국내 시장가격, 미국 수출가격 등 모든 자료를 취합,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본 업체가 상당한 양을 생산하고 이의 수출이 증가하고,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반도체 제품 중에서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구분된다.

(i) 표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

체, 혹은

(ii) 정상가 이하로 판매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있음.

제품목록은 필요에 따라 검토될 것이며, 양국 중 어느 1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상기 기준에 부합될 때 새로운 제품이 추가될 수 있다.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에 따라 어느 제품은 이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b.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업체들이 양국 정부가 합의한 양식(Format)과 범위(Scope)를 이용하여 자료를 취합토록 할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업체들은 미국내 관련 없는 당사자에게로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상기 "a" 항에 명기된 제품의 자료를 수집, 유지하도록 통보받을 것이다.

c. 상기 "b" 항에 언급된 양식과 범위를 이용한 자료 취합과 유지의 목적은 일본 업체 자신의 사용목적과 본 협정과 제4조와 제7조 b항 또한 IV장2조c 항에 따른 반덤핑 절차에서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3. 미국정부는 자체 발동이든 혹은 청원에 따르든 가용한 어떠한 자료에 기초하여 반덤핑 케이스를 발동할 완전한 권한을 보유한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업체가 수집한 자료라고 일본 정부가 확인한 어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미국정부가 개시할 경우, 양국 정부는 반덤핑 조사 시작전에 본 협정 IV장4조에 명기된 긴급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4. 일본 반도체 수출업체가 취합한 자료라고 일본 정부가 확인한 어떤 제품의 미국 시장에서의 반덤핑 협의에 관하여 미국 정부의 반덤핑 규제조치가 있을 경우, 일본정부는 관련 일본 반도체 수출업체가 상기 2조b항에 의하여 취합된 자료를 美 상무부에 14일 이내에 제출토록 지도한다. 정상적인 미 반덤핑 절차에 따라 추가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양국 정부는 GATT의 관련 조항과 GATT 반덤핑 코드에 따라 제3국에서의 피해 덤핑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6. 양국 정부는 GATT 반덤핑 코드 제12조

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관련업체들이 본 조항에 명기된 원칙을 지지도록 권장한다.

7. a. 제3국이 GATT 반덤핑 코드 제12조에 따라 반덤핑 조사 진행을 개시할 경우, 양국의 반도체 수출업체들은 제3국 관련당국의 요청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한다.

b.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업체가 제3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2조b항에 따라 취합된 데이터 혹은 EPROMs의 경우 하기의 IV장1조에 언급된 개정된 정지 협정의 관련조항에 따라 취합된 자료를 제출토록 권유한다.

4. 일반조항

1. 양국 정부는 본 협정이 EPROMs에 대한 정지 협정이 개정, 대체되면 시행될 것이며, 256K와 상기의 DRAMs에 대한 덤프 정지 협정은 종료되며 미 상무부는 이에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료키로 합의한다.

2. a. 일본 반도체 수출업체가 III장2 항에 따라 데이터를 취합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확인한 제품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미국 시장에서 청원, 혹은 행정 권한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양국 정부는 하기의 4항에서 명기된 긴급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b. 일본 반도체 수출업체가 III장2 항에 따라 데이터를 취합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확인한 제품에 대하여 일본 반도체가 제3국 시장에서 행한 덤프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협의로 GATT 반덤핑 코드 12조에 따른 청원을 미국 정부가 접수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청원서 제출전에 하기 4 항에 기술된 긴급협의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c. 상기 b항에 따른 긴급 협의시, 양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피해정도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신빙성과 정확성을 협의케 된다.

일본 수출업체들의 덤프 여부에 대해 양국정

부간 이견이 있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반덤핑 케이스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 일본 정부는 관련 일본 업체들에게 긴급협의서 사용 목적으로 Ⅲ. 2.b항에 따라 취합된 자료, 혹은 EPROMs의 경우 상기 1항에서 언급된 개정 반덤핑 정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취합된 자료 또한 합의된 양식에 따라 공개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양국 정부에 제공토록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d. 일본정부가 미국 반도체 수출업체를 상대로 GATT 반덤핑 코드 12조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 회의는 상기의 b, c항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개최된다.

3. 양국 정부는 진전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기적인 협의가 본 협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간 정기적인 반도체 협의는 양국 정부가 이의가 없는 한 1년에 3회 개최된다.

4. 긴급 회의는 1국 정부에 의해 요청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긴급 협의는 양국 정부가 상호 추후 협의 개시일을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일로부터 14일내에 열려야 한다.

5. 3. 혹은 4항의 긴급 협의에서 본 협정에 따라 촉구된 노력이 미흡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본내에서 외국산 반도체 판매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적절한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6. 상기 3항의 긴급 협의를 촉진키 위한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단체는 양국 정부에 상기 3항에서 언급된 진전상황의 파악, 평가, 또한 문제 혹은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출 요청을 받을 것이다.

7. 본 협정의 주요내용이 상당히 변경되거나

나 또는 본 협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긴급 협의는 본 협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개최될 것이다.

일본 업체의 반덤핑 정지 협정 위반 또는 일본 반도체 업체의 협정 준수 정도가 85%이하인 이유로 인한 정지 협정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본 협정의 주요내용이 상당히 변경 또는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지 협정의 종료 경우,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미국의 의도와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8. 양국 정부가 상기의 7항에 따라 긴급 협의 기간 동안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1국 정부는 다른 1국 정부에 60일간의 서면 통보기간을 줌으로서 본 협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 시킬 수 있다.

9. 양국 정부는 각국에서 발효중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의 제조항을 시행할 것이다.

본 협정의 어느 조항도 양국의 독점 금지법에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10. 본 협정과 이에 따라 양국 관련 당사자간의 협력이 제3국의 이익을 손상시킬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

양국의 각 정부는 요청이 있을 시 즉각 관련 제3국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11. 양국 정부는 GATT하의 각국의 권리와 의무가 본 협정으로 영향받지 않음을 인식한다.

12. 본 협정기간은 1991. 8. 1 발효되어 향후 5년간 지속된다.

본 협정 시행후 3년되는 연말에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1996. 7. 31 이전에 본 협정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 공동으로 결정한다.